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기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3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양기대·강훈식·김경만

김주영 · 김홍걸 · 민형배

이형석 · 임오경 · 한병도

홍성국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 및 전문대학 등 학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각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전공대학의 경우 지방세 면제 특례에 따라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85%의 감면만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, 전문대학 은 지방세 면제 특례 규정의 예외대상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 액 감면받고 있음.

전공대학은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고 있는 기관이므로, 전공대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동일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 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77조의2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50조"를 "제44조제2항, 제50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	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
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	제한) ①
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	
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	
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	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	
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	
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	
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	
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	
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	
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	
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	
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	
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	2
조제1항, 제13조제3항, 제16	
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20	
조제1호, 제29조, 제30조제3	

항, 제33조제2항, 제35조의2, 제36조,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, <u>제50조</u>, 제55조, 제57조의2제2항(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정한다), 제57조의3제1항, 제62조, 제63조제2항·제4항, 제66조, 제73조, 제76조제2항, 제77조제2항, 제82조제2항, 제84조제1항,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

②・③ (생략)

<u>제44</u> 조제2항, 제50조
②·③ (현행과 같음)